

63학술연구기금 관리내규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신동아그룹 회장인 최순영 동문(이하 “출연자”라 한다)이 성균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전임교원의 학술진흥 및 연구활동 의욕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출연한 재원으로 설치한 연구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이 연구기금의 명칭은 63학술연구기금(이하 “연구기금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3조(원금) ① 연구기금은 최순영 회장이 출연한 10억원을 그 원금으로 한다.

② 연구기금은 영구히 보전되어야 하며, 매년 기금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과실금의 30퍼센트 이상을 원금에 편입하여 계속 증식되도록 한다.

제4조(연구기금의 관리) ① 연구기금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연구기금관리위원회(이하 “관리위원회”라 한다)가 관리·운용한다.

② 관리위원회는 연구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하되, 출연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.

1. 금융기관에 예탁
2.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
3. 기타 연구기금 증식을 위한 운용

③ 기금의 관리는 이를 본교 재무팀에 위임할 수 있다.

제5조(63학술연구비 지급) ① 연구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금중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금에의 편입금을 제외한 재원으로 63학술연구비(이하 “연구비”라 한다)를 지급한다.

② 연구비 수혜대상자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하며, 다음 분류에 따라 지급한다.

1. 인문·사회·예체능계
2. 자연계

③ 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④ (삭제)

제6조(관리위원회) 이 연구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를 둔다.

제7조(관리위원회의 구성) ① 관리위원회는 자연과학캠퍼스 부총장, 산학협력단장과 총장이 본교 전임교원 가운데서 위촉하는 7인이내의 위원 및 출연자가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 1인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자연과학캠퍼스 부총장이 된다.

②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이 기금 및 관련업무를 총괄한다.

제9조(관리위원회의 기능)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연구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2. 원금에서 발생하는 과실금의 처리, 63학술연구 과제선정 및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
3. 이 내규 개정에 관한 사항
4.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
5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중요 사항

제10조(회의) ①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업무소관) ① 위원회의 사무는 연구지원팀에서 관장하며 회의록·장부 및 기타 서류를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
② 연구비 지원에 따른 제반 사무처리도 연구지원팀에서 행한다.

제12조(목적의 변경) 제1조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출연자 또는 그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13조(감사) 관리위원회는 본교 내부감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 연 1회 감사를 받아야 한다.

제14조(회계연도)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제15조(세부사항) 이 내규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1995학년도 연구비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연자가 따로 출연하는 재원으로 지급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199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